

바람직한 인터넷거버넌스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방향

윤복남 (KIGA 주소분과위원장,
법무법인(유) 한결 변호사)

발표에 앞서...

- 인터넷 주소자원 법률 개정안을 명시하여 제시함
- 왜, 지금, 법률개정인가?
- 기존 논의의 연장선 –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체제의 모색
-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의 시작
- 한국의 거버넌스 – 오래된 역사, 새로운 출발

한국 인터넷거버넌스 역사

- 1999~2004 인터넷주소위원회(NNC)
- 2005~2006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(법 시행령)
- [2007~2008 공백기]
- 2009~2012 인터넷발전협의회 [인터넷주소정책포럼]
- 2012~2013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(KIGA)
[주소인프라분과]
- 2014~ 현재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(KIGA)
[주소자원분과]

그간 논의 경과

- **2015 KrIGF – 다자간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방안
(주소정책 중심으로)**
- **2016 KrIGF –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**
 - * KIGA 주소분과 워킹그룹 (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
현황과 향후 방향 보고서)
- **2017 KrIGF – 멀티스테이크 홀더 거버넌스 구현을
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방향**
 - * KIGA 주소분과 워킹그룹 (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)

무엇이 문제인가? 그 해결책은?

- 이해당사자의 참여 부족 – 정부의 참여 부족, 기업 및 이용자 참여 부족
- 거버넌스 기구의 지속성 및 안정성 부족 – 조직적, 재정적 취약성
- 작년에 제시된 제안(해결방향)
 - (1) 정부의 참여 의지와 투자
 - (2) 인터넷 주소자원 거버넌스 기구 제도화
 - (3) 각 이해당사자 참여활성화

2017년 현재의 과제는?

- 제자리걸음?
- 제도화와 참여 활성화의 상호 모순관계
-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?
- 법개정안은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 첫발
- 부득이 법개정안으로 출발함

cf. 주의점 : 이해당사자 참여 활성화나 기반확대를 제도화의 틀만으로 바라보지는
않음

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 취지

- 제안배경

- 정부주도의 하향식 주소자원 관리체제의 변경 필요성(기존 구조 장단점 평가)
- 민간 각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한 상향식 주소정책 논의기구 구성
- 해외에서도 ICANN, OECD 여러 국가는 이러한 상향식 멀티스테이크 홀더 구조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

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안 (1안)

- 인터넷주소에 관한 정부권한을 민간에 대
폭 이양
- 민관정책기구로서 멀티스테이크 홀더 구
조에 의한 상향식, 민주적 선출에 의한 인
터넷주소위원회 신설
- 다만, 정부의 최종적 감독권한은 있음
-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KISA 소속 인터넷
정보센터(KrNIC)의 재단법인화 고려

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안 (2안)

- 현실적으로 1안 추진이 어려울 경우 수정 대안임
- 현재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선출절차를 변경하여 상향식에 가깝도록 개정함
-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참여를 위해서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멀티스테이크 홀더 방식으로 운영함
(2005~6년 실무위원회 모델의 단점 보완)

각 개정안의 평가

- **개정안 1안의 평가**

- 한국 인터넷거버넌스의 획기적 변화를 꾀함
- 법률 전면개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논의 및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야 함

- **개정안 2안의 평가**

- 인터넷거버넌스의 부분적 변화이되, 상대적으로 도입하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됨

- **총평**

- 여건에 맞게 논의하되, 법개정의 진정한 취지가 제대로 부각되어야 함. 민간참여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

법 개정안의 현실화를 위하여

- 국회의원 – 의원입법 가능성 모색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부 의견수렴
- 각 이해당사자 공개적 의견수렴
- 설득 논거 마련
 - (1) 국제적인 사례 수집 : OECD 국가의 주소거버넌스 연구
 - (2) 국내 다른 분야에서의 유사사례 수집 :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례 연구

별첨 자료 (온라인 배포)

- 인터넷주소법 개정안(1안)
- 인터넷주소법 개정안(2안)
- OECD 국가별 거버넌스 현황